



[연재 일정 안내]

2009. 1월호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목적
2009. 2월호	중국의 전리제도
2009. 3월호	중국의 상표제도
2009. 4월호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2009. 5월호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2009. 6월호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분석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특하나라(www.patentmap.or.kr)에서 전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1) 분석대상의 모집단

본 연구의 정량분석에 대한 데이터 모집단은 중국 북경대 법보 및 북경시 법원망, 미법망 등의 DB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모집단은 중국의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법원에서 2003. 01. 01 - 2008. 06. 30까지 판결이 선고된 민사사건으로서, 공개된 재판문서(판결서, 조정서) 총 1,022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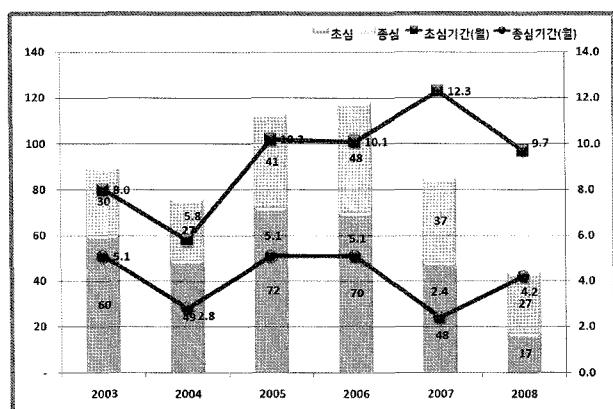
지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판결	조정	판결	조정	총계										
북경	42	8	48	4	56	10	119	31	111	29	33	4	409	86	495
상해	39	7	40	1	22	-	22	-	14	-	14	2	151	10	161
광동	14	1	31	4	16	1	39	4	9	2	13	5	122	17	139
절강	-	-	13	1	94	36	15	9	6	1	5	2	133	49	182
산동	14	1	3	-	15	4	-	1	5	-	2	-	39	6	45
총계	109	17	135	10	203	51	195	45	145	32	67	13	854	168	1,022

2) 발명 · 실용신안 민사사건 분석

(1) 판결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중국의 전리소송(발명 · 실용신안) 관련 민사판결은 2003년 ~ 2008.6.30까지 5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90건, 2004년 76건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5년 113건, 2006년 118건으로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경이 2005년까지 40건 내외 판결건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6년 78건, 2007년 63건으로 상당수의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북경 관할을 중심으로 전리분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에서의 전리소송은 평균적으로 평균 7.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초심의 경우에는 8.8개월, 종심의 경우에는 3.9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사건은 연도별로 2003년 5건, 2004년 8건, 2005년 10건, 2006년 6건, 2007년 10건, 2008년 7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북경 31건(67.4%), 상해 10건(21.7%), 절강성 3건(6.5%), 광동성 2건(4.4%)의 건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들이 지방보호주의 색채가 약한 북경과 상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중국에서의 외국인 관련 전리소송은 평균적으로 평균 8.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초심의 경우에는 12.8개월, 종심의 경우에는 4.3개월이 소요되어 내국인들의 전리소송보다 외국인 관련 전리소송의 소요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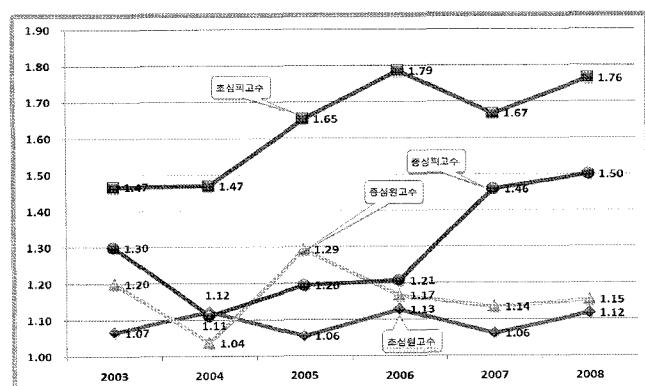
(2) 원 · 피고수

중국의 전리소송의 경우, 전체 526건의 사건에서 원고수는 590인, 피고수는 784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건당 원고수는 1.12인, 피고수는 1.49인으로 분석되어 원고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형태는 예외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일한 원고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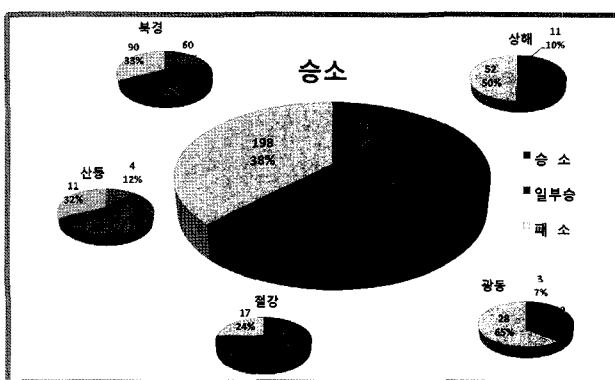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공동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초심의 경우에는 2003년 평균 피고수가 1.47인에서 2008년 1.76인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심의 경우에도 2003년 평균 피고수가 1.30인에서 2008년 1.48인으로 증가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공동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건당 피고수는 북경 초심 1.72인, 종심 1.44인, 상해 초심 1.65인, 종심 1.18인, 광동성 초심 1.37인, 종심 1.06인, 절강성 초심 1.33인, 종심 1.15인, 산동성 초심 1.46인, 종심 1.29인으로 북경과 상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당 피고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원고 승소율

중국에서 제기된 총 526건의 전리소송에서 원고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78건(14.8%), 일부 승소한 경우는 250건(47.5%)으로 전체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승소 및 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가 6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2003년 58.9%, 2004년 53.9%, 2005년 75.2%, 2006년 63.6%, 2007년 61.2%, 2008년 33.9%로 2005년도에 원고의 승소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원고승소율(승소 및 일부승소 포함)을 살펴보면, 북경 184건(67.2%), 상해 53건(50.5%), 광동성 15건(34.9%), 절강성 53건(75.7%), 산동성 23건(67.6%)으로 분석되어 절강성, 북경, 산동성이 원고의 승소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강성의 경우 원고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통계수치만으로 특정지역에서 원고의 승소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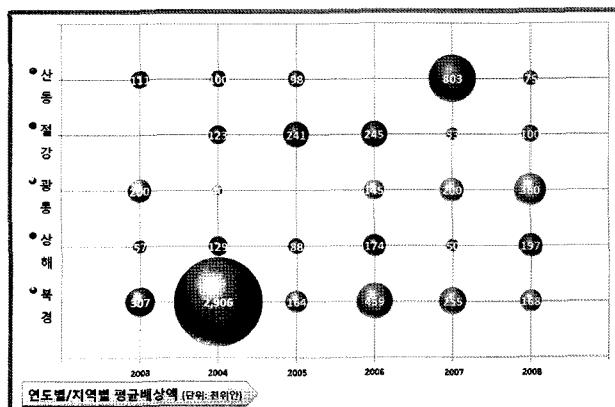
중국에서 외국인이 원고가 된 전리소송은 모두 46건이 제기되었으며, 원고가 31건에서 일부승소(완전승소 없음)하였으며, 15건(32.6%)에서 패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6건 중 31건(67.4%)이 북경 관할에서 소가 제기되어 원고가 24건에서 일부 승소하여 77.4%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상해 10건(21.7%), 광동성 및 절강성에서 각 2건이 제기되었으며, 산동성에서는 외국인이 원고가 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평균배상액

2003년 - 2008년 상반기 전리소송의 총 손해배상액은 약 7,491만 위안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고액인 약 2,846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경의 2004년도 총배상액이 급증한 것은 전기전자 분야의 특정사건에서 총 2,540만 위안(전리 사용비 1,818만 위안, 손해배상 722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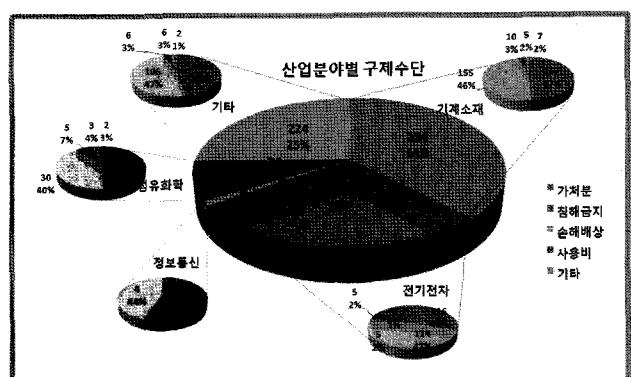
상당수의 전리소송에서는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35만 위안 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주된 분쟁의 대상이 첨단과

학기술분야 보다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일반산업분야의 권리들이 주로 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경의 경우 평균배상액이 약 57만 위안으로 전체 평균배상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총 배상액의 약 7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구제수단별 전리소송현황

구제수단별로는 각 산업분야 공히 침해금지(기계소재 157건, 전기전자 116건, 정보통신 5건, 섬유화학 34건, 기타 104건)와 손해배상(기계소재 155건, 전기전자 114건, 정보통신 4건, 섬유화학 30건, 기타 106건)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처분은 기계소재 7건, 전기전자 3건, 섬유화학 및 기타가 각 2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임시보호기간 사용비의 경우에는 기계소재 10건, 기타 6건, 전기전자 및 섬유화학이 5건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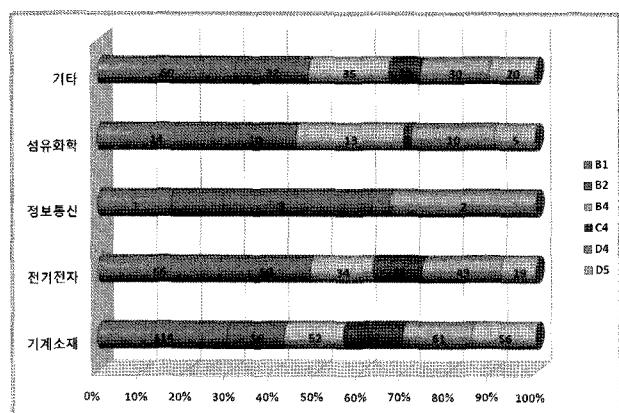


(6) 산업분야별 법률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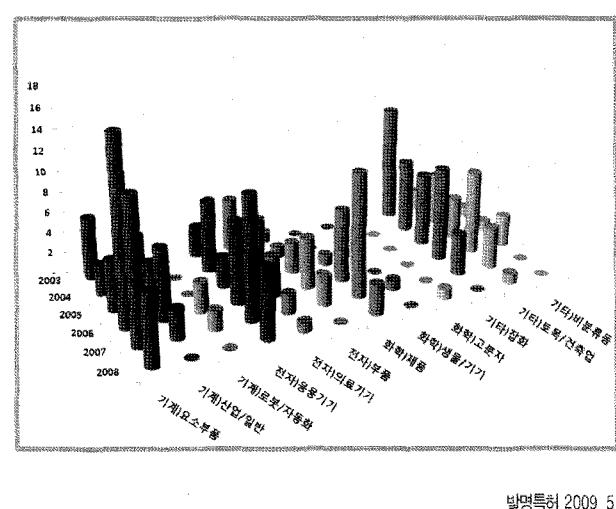
중국의 전리소송에서 산업분야별 법률쟁점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 법률쟁점은 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무효심판, 비교의 행위 등이다. 법률쟁점을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리권의 침해판단과 관련 문언침해(B1) 255건, 균등론(B2) 145건, 공지기술의 참작(B4) 134건이 각각 문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입증과 관련하여 증거일반(C1) 345건이, 방어와 관련하여 무효심판(D4) 146건, 비교의행위(D5) 100건이 각각 문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어와 관련하여 무효심판이 많이 활용되는 것은 실체심사 없이 전리권을 수여하는 실용신안 관련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리 민사소송에서 중국기업들이 비교의행위를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사건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리침해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여 전리침해행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 전리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이다.



분석되어 전체적인 산업분야별 제품군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계소재 분야의 로봇/자동화기계분야 총 5건, 전기전자 분야의 전자 부품 제품군 총 13건, 정보통신 분야의 통신부품 총 2건 등 의 전리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북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전리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중국산업 발전의 향후 지도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라 판단된다.



(7) 산업세부분야별 판결건수 (북경)

중국의 북경에서 제기된 전리소송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계소재 분야 86건(31.4%), 전기전자 분야 88건(32.1%), 기타 분야 70건(25.6%), 섬유화학 분야 25건(9.1%) 및 정보통신 분야 5건(1.8%)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소재 분야에서 요소부품 53건(61.6%)과 산업/일반 기계 23건(26.7%), 전기전자 분야에서 전자용용기기 40건(45.5%)과 의료기기 19건(21.6%), 섬유화학 분야에서 화학제품 23건(92.0%), 기타 분야에서 잡화 38건(54.3%)과 토목/건축업 24건(34.3%)의 각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